

1. 개정이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인증심사를 의무화하고,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며,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 기준에 해상교통밀집도 항목을 도입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의무화
(안 제43조)

해양사고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개선 등을 위한 수시인증심사 대상 확대

나. 여수 해상교통특정해역의 깊은수심항로 조정(안 별표 2)

삼여암초 인근 저수심 구간의 준설이 완료됨에 따라 깊은 수심항로 폭 확대 및 항행 금지구역 조정을 통한 통항 선박의 안전 확보

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시 안전진단 항목 추가(안 별표 7)

해상교통 안전진단의 신뢰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안전진단 항목별 포함 내용에 해상교통밀집도 항목 및 작성기준 추가

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17, 별표 18)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준 및 결격사

유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2. ~ 11. 13.)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별표 2의 광양만 출입항로의 깊은수심 항로 제1구간의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란 제2호를 “북위 34도45분41초, 동경 127도49분30초”로 하고, 제4호를 “북위 34도47분45초, 동경 127도48분52초”로 하며, 같은 구분 (광양만 출입항로)의 항행 금지구역의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란 제1호를 “북위 34도47분45초, 동경 127도48분52초”로 한다.

별표 7 제1호의 해상교통현황측정 항목의 포함 내용란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라목을 “해상교통밀집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상교통밀집도

항목	작성기준
설정	1) 선박 위치정보: 선박 종류, 크기별 위치정보 구분
기준	2) 공간해상도: 대상 해역을 일정 간격의 격자로 분할

해상 교통 밀집도 분석	1) 밀집도 산정 : 단위격자별 선박 위치정보의 밀도 산출 2) 밀집도 등급화 : 단위격자별 밀집도 값을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 3) 분석결과 표출 : 등급별 밀집분포의 시각적 표출
해상 교통 밀집도 평가	1) 교통로 중첩분석 : 해상교통로와 사업대상지의 중첩·이격거리 분석 2) 밀집도 평가 : 등급별 밀집도와 사업대상지 간의 중첩·이격거리 분석

별표 17 제1호가목의 저사고율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가목의 “3명 이상의 사망자·실종자”를 “1명 이상의 사망자·실종자”로 한다.

$$\text{저사고율} = \frac{\text{업체별 해양사고율}}{\text{총 평가대상의 해양사고율}} + \frac{\text{업체별 부상자율}}{\text{총 평가대상의 부상자율}}$$

별표 18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현행 나목부터 라목을 가목부터 다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43조(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 <u>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